

# 수퍼스타칼리지 운영규정

(제정 2017. 12. 19.)  
(제명변경 2020. 3. 1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수퍼스타칼리지(SuperStar College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수퍼스타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3.1.>

1. 교양 및 융합 교육 발전계획 수립
2. 교양 및 융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
3. 교양 및 융합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
4. 학 제 <2020.5.21.>
5. 수퍼스타칼리지 교원 인사
6. 수퍼스타칼리지 예산 편성 및 운영
7. 그 밖에 수퍼스타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

## 제2장 조직

**제3조(학장)** ① 수퍼스타칼리지에 학장을 두며, 학장은 별도의 추천 없이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학장은 수퍼스타칼리지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개정 2020.3.1.]

**제4조(조직)** ① 수퍼스타칼리지에 교양학부, 융합학부를 둔다. <개정 2020.4.14.>

② 교양학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성교육과, 외국어교육과, 의사소통교육과, 소프트웨어교육과, 창의융합교육과를 두며, 각 교육과장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1. 품성교육과는 인성, 체플, 기독교, 사회봉사 교과와 기획, 개발,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다만, 체플과 기독교는 선교지원실, 사회봉사는 사회봉사센터에서 운영 및 지원한다.
2. 외국어교육과는 외국어 교과와 기획, 개발,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3. 의사소통교육과는 의사소통 교과와 기획, 개발,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4. 소프트웨어교육과는 소프트웨어 교과와 기획, 개발,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5. 창의융합교육과는 핵심교양, 자유교양 교과와 기획, 개발,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융합학부에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을 두며, 융합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 및 지원한다.

[본조개정 2020.3.1.]

**제5조(행정인력)** 수퍼스타칼리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및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설치)** 수퍼스타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**제7조(구성)**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. <개정 2020.3.1.>

③ 교양교육연구센터장 및 교양학부의 각 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20.3.1., 2023.2.24.>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수퍼스타칼리지 행정지원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⑥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0.3.1.>

1. 교양 및 융합 교육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양 및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 제 <2020.5.21.>
4. 수퍼스타칼리지 예산 및 재정지원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수퍼스타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9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교원인사위원회

**제10조(설치)** 수퍼스타칼리지의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0.3.1.>

**제11조(구성)**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. <개정 2020.3.1.>

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교원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수퍼스타칼리지 행정지원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**제12조(기능)**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6.25.>
2. 교원 연구년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3. 우수교육자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6.25.>
4. 그 밖에 수퍼스타칼리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

**제13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5장 삭 제

[본장삭제 2019.12.20.]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「기초융합교육원 운영위원회 규정」, 「기초융합교육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」, 「교육과정 운영규정」에 따라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타 규정에서 기초융합교육원은 수퍼스타칼리지, 기초융합교육원장은 수퍼스타칼리지 학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23. 2. 24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